##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전재수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5102 발의연월일: 2024. 10. 31.

발 의 자:전재수·박선원·이재관

이용선 • 복기왕 • 김재원

송기헌 · 김정호 · 박정하

민형배 의원(10인)

## 제안이유

현행법은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영업행위 준수사항, 금융교육 지원 및 금융분쟁조정 등 금융소비자 관련 제도를 통합하여 규정함으로써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정책을 강화하기 위하여 2020년 3월 24일 제 정되었음.

그러나 당초 논의되었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, 손해액 추정제도 등소비자 보호를 위한 핵심내용은 제외되어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는 상황임.

이에 금융상품판매업자등으로 하여금 원칙적으로 겸영을 할 수 없도록 하고, 손해배상의 입증책임을 금융상품판매업자등에게 전환하면서 투자형 상품에 대한 손해배상액 추정 규정과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며, 대리중개업자로 하여금 판매수수료를 고지하도록 하고, 금융상품으로 인하여 금융소비자의 재산상 피해가 발생하였음이 명백

히 인정되는 경우 금융소비자피해보상계획을 금융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등 현행법을 보완하여 금융소비자 보호제도를 내실화하려는 것임.

## 주요내용

- 가. 금융상품판매업자등으로 하여금 금융소비자의 이익과 상충될 우려 가 있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겸영하지 못하도록 금지함(안 제12조의2 신설).
- 나. 금융상품판매대리·중개업자에게 금융상품 계약 체결의 권유를 위하여 사용하는 안내자료 등에 금융상품판매업자로부터 받는 수수료 ·보수와 그 밖의 대가의 내용 등을 명백하고 알기 쉽게 표기하도 록 함(안 제26조제3항 신설).
- 다.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이 법을 위반하여 금융소비자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도록 하고, 고의 또는 중과실의 경우에는 금융소비자에게 발생한 손해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함(안 제44조).
- 라.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일반금융소비자를 대상으로 투자성 상품의 계약 체결을 권유할 때 설명의무를 위반하여 일반금융소비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손해액 추정 규정을 마련함(안 제44조의2).
- 마. 금융위원회로 하여금 금융상품으로 인하여 금융소비자의 재산상 피해가 발생하였음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 금융상품판매업자등에

게 금융소비자피해보상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할 것을 명령할 수 있 도록 하고, 금융상품판매업자등으로 하여금 금융소비자피해보상계 획을 이행할 의무를 부여함(안 제49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신설).

#### 법률 제 호

##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2조제2항제6호가목을 삭제한다.

제3장에 제1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2조의2(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겸영 제한)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제 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등록업무 중 금융소비자의 이익과 상충될 우려가 있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겸영(兼營)하지 못한다.

제26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4항(종전의 제3항) 중 "표지 게시 및 증표 제시에"를 "표지 게시, 증표 제시 및 제3항에 따른 표기에"로 한다.

③ 금융상품 계약 체결의 권유를 위하여 사용하는 안내자료 등에는 금융상품판매대리·중개업자가 금융상품판매업자로부터 받는 수수료·보수와 그 밖의 대가의 내용 등을 명백하고 알기 쉽게 표기하여야 한다.

제44조제1항 중 "고의 또는 과실로 이"를 "이"로 하고,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다만, 그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-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금융소비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금융소비자에게 발생한 손해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진다. 다만, 그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- ③ 법원은 제2항의 배상액을 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.
- 1. 고의 또는 손해 발생의 우려를 인식한 정도
- 2. 위반행위로 인하여 금융소비자가 입은 피해 규모
- 3. 위반행위로 인하여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취득한 경제적 이익
- 4. 위반행위에 따른 벌금 및 과징금
- 5. 위반행위가 지속된 기간 및 횟수
- 6.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재산상태
- 7.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피해구제를 위하여 노력한 정도 제4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- 제44조의2(손해배상액 추정)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일반금융소비자를 대상으로 투자성 상품의 계약 체결을 권유(금융상품자문업자가 자문 에 응하는 경우를 포함한다)하거나 일반금융소비자의 요청으로 설명 할 때 제19조제1항 또는 제3항의 설명의무를 위반하여 일반금융소

비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해당 금융상품의 취득으로 인하여 일반 금융소비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금전 등의 총액에서 그 금융상품의 처분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그 일반금융소비자가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수 있는 금전 등의 총액을 뺀 금액을 금융상품판 매업자등의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액으로 추정한다. 이 경우손해액의 구체적인 산정방식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49조에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③ 금융위원회는 금융상품으로 인하여 금융소비자의 재산상 피해가 발생하였음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에는 금융상품판매업자등에게 금융소비자의 피해를 자율적으로 보 상하기 위한 계획(이하 "금융소비자피해보상계획"이라 한다)을 수립 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간 이내에 제출할 것을 명할 수 있다.
- ④ 제3항에 따라 명령을 받은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다음 각 호에 따른 내용을 반영한 금융소비자피해보상계획을 수립하여 금융위원 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
- 1.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제3항과 관련하여 이 법 또는 다른 금융 관련 법률의 위반한 사실이 있는지에 대한 조사 결과
- 2. 제1호에 따른 조사 결과 이 법 또는 다른 금융 관련 법률의 위반 사실이 확인된 경우 금융소비자의 피해가 그 위반사실로 인해 발 생한 것인지를 조사한 결과
- 3. 제2호에 따른 조사 결과 금융소비자의 피해가 금융상품판매업자

등의 위법행위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금융소비자에게 보상할 금액, 보상시기 및 보상방법

⑤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제4항에 따른 금융소비자피해보상계획을 이행하여야 한다.

제51조제1항제4호 중 "시정명령 또는 중지명령을"을 "시정명령, 중지명령 또는 제출명령을"로, "시정하거나 중지하지"를 "시정, 중지 또는 제출하지"로 한다.

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적용례) 제44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이후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이 법을 위반한 경우부터 적용한다.

제3조(손해배상액 추정에 관한 적용례) 제44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투자성 상품의 계약 체결을 권유(금융상품자문업자가 자 문에 응하는 경우를 포함한다)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
# 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		
제12조(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등	제12조(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등			
록) ① (생 략)	록) ① (현행과 같음)			
② 제1항에 따라 금융상품직접	②			
판매업자 또는 금융상품자문업				
자로 등록하려는 자는 다음 각				
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				
다. 다만, 금융상품직접판매업				
자에게는 제6호의 요건을 적용				
하지 아니한다.				
1. ~ 5. (생 략)	1. ~ 5. (현행과 같음)			
6. 금융상품판매업자와 이해관	6			
계를 갖지 않는 자로서 다음				
각 목의 요건을 갖출 것				
가. 금융상품판매업(「자본시	<u>&lt;삭 제&gt;</u>			
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				
법률」 제6조제8항에 따른				
투자일임업은 제외한다)과				
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				
하는 금융업을 겸영하지				
아니할 것				
나. ~ 라. (생 략)	나. ~ 라. (현행과 같음)			
③ ~ ⑥ (생 략)	③ ~ ⑥ (현행과 같음)			
<u>&lt;신 설&gt;</u>	제12조의2(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			

제26조(금융상품판매대리・중개 업자의 고지의무 등) ①・② (생 략) <신 설>

③ 제2항에 따른 표지 게시 및 증표 제시에 관한 구체적인 사 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해배상책임) ① 금융상품판매 업자등이 고의 또는 과실로 이 법을 위반하여 금융소비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그 겸영 제한)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은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등록업무 중 금융소비자의 이익과 상충될 우려가 있는 업무로서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겸영(兼 營)하지 못한다.

제26조(금융상품판매대리・중개 업자의 고지의무 등) ①・② (현행과 같음)

③ 금융상품 계약 체결의 권유 를 위하여 사용하는 안내자료 등에는 금융상품판매대리・중 개업자가 금융상품판매업자로 부터 받는 수수료・보수와 그 밖의 대가의 내용 등을 명백하 고 알기 쉽게 표기하여야 한다. ④ -----표지 게시, 증 표 제시 및 제3항에 따른 표기

제44조(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손 제44조(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손 해배상책임) ① -----------|

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.------.다만, 그 금융상품판<단서 신설>매업자등이 고의 또는 과실이

②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제19 조를 위반하여 금융소비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. 다 만, 그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고의 및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<신 설>

-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금융상 품판매업자등이 고의 또는 중 대한 과실로 금융소비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금 융소비자에게 발생한 손해의 3 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진다. 다만, 그 금 융상품판매업자등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  - ③ 법원은 제2항의 배상액을 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 항을 고려하여야 한다.
  - 1. 고의 또는 손해 발생의 우려

     를 인식한 정도
  - 2. 위반행위로 인하여 금융소비 자가 입은 피해 규모
  - 3. 위반행위로 인하여 금융상품 판매업자등이 취득한 경제적 이익
  - 4. 위반행위에 따른 벌금 및 과 <u>징금</u>

<신 설>

- 5. 위반행위가 지속된 기간 및횟수
- 6.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재산 상태
- 7.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피해 구제를 위하여 노력한 정도 제44조의2(손해배상액 추정) 금융 상품판매업자등이 일반금융소 비자를 대상으로 투자성 상품 의 계약 체결을 권유(금융상품 자문업자가 자문에 응하는 경 우를 포함한다)하거나 일반금 융소비자의 요청으로 설명할 때 제19조제1항 또는 제3항의 설명의무를 위반하여 일반금융 소비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해당 금융상품의 취득으로 인 하여 일반금융소비자가 지급하 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금전 등 의 총액에서 그 금융상품의 처 분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그 일반금융소비자가 회수하였거 나 회수할 수 있는 금전 등의 총액을 뺀 금액을 금융상품판 매업자등의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액으로 추정한다. 이

· ② (생 략) <신 설>

<신 설>

- 경우 손해액의 구체적인 산정 방식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제49조(금융위원회의 명령권) ① 제49조(금융위원회의 명령권) ① • ② (현행과 같음)
  - ③ 금융위원회는 금융상품으로 인하여 금융소비자의 재산상 피해가 발생하였음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경우에는 금융상품 판매업자등에게 금융소비자의 피해를 자율적으로 보상하기 위한 계획(이하 "금융소비자피 해보상계획"이라 한다)을 수립 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 간 이내에 제출할 것을 명할 수 있다.
  - ④ 제3항에 따라 명령을 받은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다음 각 호에 따른 내용을 반영한 금융 소비자피해보상계획을 수립하 여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
  - 1.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제3항 과 관련하여 이 법 또는 다른 금융 관련 법률의 위반한 사 실이 있는지에 대한 조사 결

## <신 설>

제51조(금융상품판매업자등에 대 전한 처분 등) ① 금융위원회는 금융상품판매업자등 중 제12조에 따른 등록을 한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 2조에 따른 금융상품판매업등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. 다만,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.

## 과

- 2. 제1호에 따른 조사 결과 이 법 또는 다른 금융 관련 법률의 위반사실이 확인된 경우금융소비자의 피해가 그 위반사실로 인해 발생한 것인지를 조사한 결과
- 3. 제2호에 따른 조사 결과 금 융소비자의 피해가 금융상품 판매업자등의 위법행위로 인 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된 경 우 금융소비자에게 보상할 금 액, 보상시기 및 보상방법
- ⑤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제4 항에 따른 금융소비자피해보상 계획을 이행하여야 한다.

제51조(금융상품판매업자등에	대
한 처분 등) ①	

- 1. ~ 3. (생 략)
- 4. 금융위원회의 <u>시정명령 또는</u>
   <u>중지명령을</u> 받고 금융위원회
   가 정한 기간 내에 <u>시정하거</u>
   <u>나 중지하지</u> 아니한 경우
- 5. (생략)
- ②·③ (생 략)

- 1. ~ 3. (현행과 같음)
- 4. ------<u>시정명령, 중</u> <u>지명령 또는 제출명령을</u>-----
  - --<u>시정, 중지 또는 제출하지</u>--
  - 5. (현행과 같음)
  - ② · ③ (현행과 같음)